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9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 어기구·김정호·허종식

박 정・황 희・이훈기

조 국・박수현・이정문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배출임. 우리나라도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87%에 달함.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특구발전계획을 매년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10조).
- 아.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한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기한 연장·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차.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19조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따른 발전사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 군·구를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폐지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하

- "폐지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력을 통하여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 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폐지지역 종합지원계획(이하 "종 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지원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기후위기 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종합지원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폐지지역의 인구・환경・산업 등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

- 2. 폐지 석탄발전소의 대체 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3. 폐지지역의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4. 폐지지역의 국토 및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5. 폐지지역의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폐지지역의 도로·항만·공항·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정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환경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지원계획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확정된 종합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지역활성화 사업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하 "지역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하되, 필요한 자금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 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이외의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정부는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이하"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지역의 산업 · 경제에 낙후 또는 쇠퇴가 발생한 경우
 - 2. 지역의 사회 · 경제지표의 현저한 감소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
 - 3. 지역의 지방재정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폐지지역의 주민·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협의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특구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특구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한 특구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신·재생에너지 등 우선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0조 각 호의 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 제13조(고용안정지원 등) ① 국가는 폐지지역에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 실

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공시설 등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항만·공항·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폐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학교·병원 및 관광·숙박 ·체육 및 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①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또는 제7조의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폐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우선 고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업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폐지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7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또는 지역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